체계적이고 통합된 세관행정이 온다!

EU의 新관세법 개요

지난해 10월 10일 EU 이사회는 새로운 관세법인 UCC(Union Customs Code)의 내용을 최종 확정해 공표했다. 새로운 관세법은 세부적인 실행규정의 제정권이 EU 집행위에 있음을 명시했으며 수출입 물류흐름에 부합하도록 조항 체제를 정비하고, 세관 절차의 간소화 등을 통해 경제 운영인의 권리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일부 규정을 제외한 대부분의 내용은 2016년 6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U ISSUE

2014년부터 EU 집행위는 신관세법에 규정된 수출입 통관 절차의 각 단계별 실행규정 초안을 마련하고, 28개 회원국 세관당국 간 협의와 관련 단체, 기관 등의 자문을 거쳐 세부적인 내용을 규율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세계로의 관문'으로 불리는 독일 함부르크 무역항

EU 28개 회원국에서 수출입 통관, 관세평가, 화물관리 등 세관행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관세법령은 1992년 제정된 후 수차례 개정돼 현재 시행 중인 CCC[Community Customs Code, Council Regulation (EEC) No 2913/92]라는 관세법과 1993년 제정돼 역시 수차례 개정돼 온 시행규정으로서의 CCIP[Customs Code's Implementing Provisions, Commission Regulation (EEC) No 2454/93]가 있다.

2000년대 들어 EU의 정치 · 경제 · 사회적 통합이 가속화되고 이를 둘러싼 세관행정 환경에 변화가 일자 EU는 2008년 6월 MCC(Modernised Customs Code, 세관현대화법률)라는 새로운 관세법을 제정해 발효시켰다. 그러나 EU 회원국 세관당국과 수출입 기업체 등의 전산 시스템의 미구비, 리스본 조약 발효에 따라 EU 집행위에 실행규정 제정권 위임, 세관절차의 간소화, 시행상의 문제점 보완 등을 사유로 그 적용이 연기되었고, 위 2개의 법령으로 현재의 세관행정이 규율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EU 집행위는 2012년 2월 MCC를 보완해 UCC(Union Customs Code)로 새롭게 개편했다. 그동안 관련 기관, 수출입 기업체 등과 세부 내용에 대한 자문 절차를 거쳤고, 유럽 의회에서는 2013년 9월 UCC의 내용을 일부 수정해 통과시켰으며, 최종적으로 EU 이사회는 2013년 10월 10일 UCC의 내용을 최종 확정해 'Regulation (EU) No 952/2013'으로 EU 관보에 공표했다. 관세법은 관보 게재일로부터 20일 경과 후 발효됐으나,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내용은 2016년 6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세관 절차 간소화 등 경제 운영인의 권리 확대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UCC에서는 대부분의 세관 절차에서 세부적인 실행규정의 제정권이 EU 집행위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제2조에서 "EU 집행위는 세관신고, 역내 물품 또는 역외 물품의 증명, 역내 물품의 거래에 적용되는 역내 환적절차의 이용에 대한 위임법령(delegated acts)의 제정권을 위임받음"을 규정하고 아울러 "이러한 법령은 단지 1개 회원국과 관련된 역내 물품의 거래에 적용되는 특수한 상황을 다룰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관세법 위반에 따른 조사, 벌금 등 사법 절차는 회원국 세관당국의 소관으로 정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UCC의 내용을 수출입 통관의 물류흐름에 부합하도록 조항의 배열을 정비했다. 따라서 통관 절차를 크게 EU 관세영역으로의 물품 반입과 EU 관세영역으로부터의 물품 반출로 구별하고, 세부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세 번째로는 경제 운영인의 원활한 비즈니스와 권리 강화 등을 위해 세관 절차의 간소화, 권리구제 절차 강화 등을 강조하고 있다. 먼저 현행 법령과 동일하게 누구든 세관 대리인을 지정해 세관당국과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세관 대리인은 EU 관세영역 내에서 설립돼야 함이 원칙이나 특정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신청인이 EU세관에 세관규정의 적용과 관련된 결정을 신청(세관이 요청하는 모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 세관당국은 원칙적으로 120일 이내에 결정사항을 통보해야 하고, 특정한 경우에는 그러한 결정의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재평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EU 집행위도 세관규정의 통일된 적용을 보장하기 위해 회원국이 내린 그 결정을 확정 · 보류 · 무효 · 수정 · 취소하도록 회원국에 이행법령으로 요청하도록 했다. 이에 더해 EU 집행위는 세관규정의 정확하고 통일된 적용을 신속히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긴급성이 요청되는 경우 즉시 적용 가능한 이행법령을 채택하도록 강조하고 있다.

다음으로 경제 운영인의 권리 구제와 관련해서는 누구든지 본인과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세관규정의 적용과 관련된 세관당국의 결정에 불복할 권리를 가지며, 불복 청구는 적어도 2단계가 보장됨을 규정했다. 먼저 1단계로 세관당국, 사법당국, 회원국에서 지정한 다른 기관에 불복 청구를 할 수 있으며, 다음으로 상위의 독립기관(회원국 법령에 따라 사법당국 또는 동등한 특별기관)에 불복 청구할 수 있다. 한편 불복 청구는 그 결정을 했거나 신청한 회원국을 대상으로 해야 하며, 회원국은 불복 청구 절차를 통해서 세관당국에 의해 취해진 결정이 즉시 확정되거나 정정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함을 규정했다.

세관 절차상 개선사항으로는 먼저 중앙집중식 통관을 신설했다. 수입물품이 제시된 장소와 신고인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세관당국은 수입물품이 제시된 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사무소 대신에 신고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사무소에 물품에 대한 세관신고를 제출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성태곤
주벨기에 · 유럽연합대사관 관세관
tksung@customs.go.kr

관세채무는 세관신고가 제출된 세관사무소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세관신고가 제출된 세관사무소는 신고 확인을 위한 절차와 관세채무에 상응하는 수입 또는 수출 관세 상당액을 징수해야 하며, 물품이 제시된 세관사무소는 세관신고가 제출된 세관사무소에서 요청된 검사를 수행해야 한다. 한편 두 개의 세관사무소는 세관신고의 확인과 물품의 반출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교환해야 한다.

다음으로 주목할 만한 것은 간이신고와 이를 보완하는 보충신고다. 세관당국은 특정인에게 세관 절차 규정의 적용에 필요한 모든 명세의 일부와 입증서류를 생략하는 간이신고를 허가할 수 있다. 이러한 간이신고와 신고인의 장부에 기재하는 방식(entry in the declarant's records)의 경우 신고인은 특정 기한 내에 권한 있는 세관사무소에 관련된 세관 절차에서 필요로 하는 명세를 담은 보충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특정한 경우 보충신고의 의무는 면제될 수 있으며, 간이신고 또는 신고인의 장부에 기재하는 방식과 보충신고는 간이신고가 수리된 날에 그리고 물품이 신고인의 장부에 기재된 날에 각자 발효되는 단일하고 불가분의 수단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허가에 부합해 보충신고가 제출되는 장소는 세관신고가 제출되는 곳으로 간주된다.

또한 세관신고는 예정된 물품의 세관 제시 전에 제출될 수 있으며 다만 물품이 세관신고 후 30일 내에 제시되지 않으면 세관신고는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는 규정과 신고인의 요청에 의해 특정한 기한 내에 세관신고 수정은 물품의 반출 이후 허가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됐다.

다음으로는 자율심사(Self-assessment)제도를 도입했다. 세관당국은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의 요청에 의해 당해 AEO 업체가 스스로 수출입 관세를 결정하고 세관당국에 의해 수행돼야 할 특정한 세관통제를 자율적으로 이행하도록 허가할 수 있음을 규정했다.

기타 사항으로서 수출 후 3년 내 재수입 시 수입물품의 일부에 대해서도 수입관세를 면제하는 한편, 세관당국은 경제적 필요성이 있고 세관 감시가 불리하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경우 보세장치를 위한 보관설비에 역내 물품의 보관을 허가할 수 있으며, 그 물품들은 보세장치 절차하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또한 출항 개괄신고와 재수출 통보의 경우 신고와 통보의 제출 대신 경제 운영인의 컴퓨터 시스템상 신고의 명세에 대한 세관당국의 접근으로 갈음하는 규정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BTI(Binding Tariff Information, 사전 품목분류 심사제도)와 BOI(Binding Origin Information, 사전 원산지 심사제도)의 유효기간과 관련해 이전에는 각각 6년, 3년이었는데 3년으로 일원화시켰다.

아울러 신고인의 유의사항으로서 관계인은 세관통제 목적상 세관 절차, 신고 등과 관련된 서류와 정보를 적어도 3년간 세관당국이 접근 가능한 형태로 보관해야 한다.

세관 업무의 전산화 전면 시행

UCC에서는 EU 회원국 세관 간 그리고 경제 운영인 및 세관 간 관세법령하에서 요청되는 신고, 신청 또는 결정과 같은 정보의 교환과 저장은 전자적 데이터 처리 기술로 수행돼야 함을 명시했다. 다만 이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전산 시스템이 아직 작동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를 뒀으나 늦어도 2020년 12월 31일까지만 허용할 계획이다. 또한 전산 시스템의 개발을 지원하고, 과도기의 설정을 규율하기 위해 EU 집행위는 2014년 5월 1일까지 전자 시스템의 개발 및 전개와 관련된 워크 프로그램(work programme)을 작성해야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UCC는 이미 발효됐으나 EU 집행위에 실행법령의 제정 등 권한의 위임 조항, 비용 조항 및 전자 시스템의 개발 · 전개와 관련된 워크 프로그램 조항은 2013년 10월 31일부터 적용됐고, 나머지 규정은 2016년 6월 1일부터 적용될 것이다.

따라서 2014년부터 EU 집행위는 UCC에서 규정된 수출입 통관 절차의 각 단계별 실행규정의 초안을 마련하고, 28개 회원국 세관당국 간 협의와 관련 단체, 기관 등의 자문 등을 거쳐 세부적인 내용을 규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실행규정이 완비되고 전산 시스템에 의한 각종 세관신고가 전면적으로 시행되면, 비로소 EU에서는 과거보다 더 체계화되고 통합된 세관행정이 집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UCC에서 규정된 신속하고 간편한 수출입 통관 절차가 EU의 28개 전 회원국에서 시행되면 한국과 EU 양자 간 수출입 교역이 더욱 더 확대되고, 우리 기업체도 EU와의 무역거래 시 관련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